



제417회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현행 예금보험료율 한도규정의 존속기한 연장〉

- 강민국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905호)
- 김용만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004호)

2024. 8.

정 무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목 차

I. 제안경위	1
1. 강민국의원안	1
2. 김용만의원안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1. 강민국의원안	1
2. 김용만의원안	3
III. 검토의견	5
1. 현행 예금보험료율 한도규정의 존속기한 연장	5
2. 부칙	15

I. 제안경위

1. 강민국의원안

가. 제 안 자 : 강민국의원 등 12인

나. 제 안 일 : 2024. 6. 25.

다. 회 부 일 : 2024. 6. 27.

2. 김용만의원안

가. 제 안 자 : 김용만의원 등 12인

나. 제 안 일 : 2024. 6. 26.

다. 회 부 일 : 2024. 6. 2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강민국의원안

현재 예금자보호법은 금융부실 발생에 대비하여 예금보험기금을 적립하기 위한 보험료율 한도를 모든 금융업권에 0.5%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에서 각 업권별로 구체적인 보험료율을 정하도록 하

고 있음.

또한, 「예금자보호법」 부칙은 보험료율 한도에 관한 적용기한을 2024년 8월 31일까지로 하고 있으며, 이를 기한 내 다시 정하지 아니한 경우 1998년도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한 업권별 보험료율 한도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동 부칙에서 규정한 보험료율 한도에 대한 적용기한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현행보다 낮은 보험료율 한도 규정이 적용됨에 따라, 보험료율 한도가 현행 보험료율보다 낮은 은행,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의 보험료 수입이 연간 약 8천억 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이로 인해 과거 저축은행 구조조정 비용 부담을 위해 운영 중인 특별계정의 잔여 부채 상환에 차질을 초래할 수 있고, 구조조정 비용 상환으로 인해 현재 예금보험기금 적립이 충분하지 못한 상황에서 예금보험기금의 건전성을 훼손할 우려도 있음.

따라서 보험료 수입 감소를 방지하고 예금보험기금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환위기 및 저축은행 부실 등 과거 구조조정 비용 상환이 완료되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현행 보험료율 한도의 적용기한을 연장하고자 함(안 법률 제9134호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 또한, 개정규정을 개정 법률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보험료분부터 적용하는 적용례를 부칙에 신설함(안 부칙 제2조).

2. 김용만의원안

예금보험제도는 1997년 외환위기, 2011년 저축은행 부실사태 등 금융시장의 위기 때마다 예금자 보호의 최후 보루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최근 미국의 실리콘밸리은행 파산, 스위스의 크레디트 스위스 합병 등 금융회사의 부실 발생으로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음.

현재 금융부실 발생에 대비해 예금보험기금을 적립하기 위한 보험료율은 현행법에서 한도를 금융업권 공통 0.5%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에서 각 업권별로 구체적인 보험료율을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또한, 「예금자보호법」 부칙은 보험료율 한도에 관한 적용기한을 2024년 8월 31일까지로 하고 있으며, 이를 기한 내 다시 정하지 아니한 경우 1998년도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한 업권별 보험료율 한도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동 「예금자보호법」 부칙 규정의 기한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현행보다 낮은 보험료율로 환원되어 예금보험기금의 안정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음. 이는 과거 구조조정 비용 상환으로 인해 현재 예금보험기금 적립이 충분하지 못한 상황에서 연간 7천억원 수준의 보험료 수입이 감소하고, 저축은행 구조조정 비용 부담을 위해 운영 중인 특별계정의 잔여 부채 상환도 곤란해지는 문제가 있음.

따라서 보험료 수입 감소를 막고 예금보험기금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2027년 8월 31일까지 현행 보험료율 한도의 적용기한을 연장하고자 함(안 법률 제9134호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

1. 현행 예금보험료를 한도규정의 존속기한 연장

- [illegible]

□ 예금보험공사는 각 부보금융회사¹⁾가 납부하는 예금보험료 등으로 예금보험기금을 조성하고, 예금보험제도²⁾ 운영 및 부실금융회사 정리를 지원함.

□ 현행법은 예금보험료율 한도를 금융업권 공통으로 ‘예금등 잔액의 0.5%’로 규정하고, 그 한도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부보금융회사별로 적용 요율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 규정은 2024년 8월 31일까지만 적용되는 일몰규정임.³⁾

- 2024년 8월 31일까지 현행법상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지 아니할 경우 1998년의 「법률 제5492호 예금자보호법」⁴⁾에 따라 현행 한도보다 낮은 업권별 예금보험료율 한도를 적용하게 됨.

□ 1998년 9월 이전의 「법률 제5492호 예금자보호법」은 0.05~1%까지 예금보험료율 한도를 업권별로 상이하게 설정하였음.

- 하지만, 외환위기 대응을 위한 기금 확충 필요성⁵⁾에 따라 1998년 9월

1) 은행,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중앙회(「예금자보호법」 제2조제1호)
2) 예금보험공사가 금융회사로부터 보험료를 받아 기금을 적립하고, 만약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 대신 지급하는 제도
3) 「예금자보호법」 제30조(보험료의 납부 등) ① 각 부보금융회사는 매년 예금등의 잔액(보험회사의 경우에는 「보험업법」 제120조에 따른 책임준비금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1천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그 금액이 1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10만원)을 연간 보험료로 공사에 내야 한다. 이 경우 부보금융회사별로 경영상황 및 재무상황, 제24조의3제2항에 따른 각 계정별 적립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율을 다르게 한다.
※ 2024.8.31.까지 요율한도를 다시 정하지 않는 경우 법 제5492호의 업권별 요율한도 적용(법 제9134호 예금자보호법 부칙 제2항)
4) 「법률 제5492호 예금자보호법」 제30조(보험료의 납부 등) ① 각 부보금융기관은 매년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예금등의 잔액(보험사업자의 경우에는 직전 事業年度의 預金等の 總額)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당해 금액이 1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10만원)을 보험료로 공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보금융기관별로 경영 및 재무상황등을 고려하여 그 비율을 다르게 할 수 있다.
※ (각호) 은행: 년율 1만분의 5, 증권회사: 년율 1만분의 10, 보험사업자: 년율 1만분의 100, 종합금융회사: 년율 1만분의 15, 상호신용금고: 년율 1만분의 15, 신용협동조합: 년율 1만분의 15

법률을 개정해 전 업권에 대해 0.5%의 예금보험료율 한도를 일괄 적용함으로써 금융업권의 부담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하되,

- 한도 인상에 따른 금융업권 부담을 고려해, 한도규정의 존속기한까지 요율 한도를 다시 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1998년 9월 이전의 요율 한도로 환원하는 일몰규정을 도입함.⁶⁾
- 1998년 9월 요율 한도 규정에 대한 존속기한(5년)이 설정된 이후 2002년(5년연장), 2008년(3년연장), 2011년(5년연장), 2016년(5년연장), 2021년(3년연장)의 총 다섯 차례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법률 개정이 있었음.⁷⁾

□ 현재 시행령 제16조제1항⁸⁾ 및 별표1에 따라 실제 적용되는 예금보험료율은 은행 0.08%, 금융투자 0.15%, 상호저축은행 0.4%이나, 한도 규정 일몰로 인해 1998년의 「법률 제5492호 예금자보호법」을 적용할 경우 최고 한도를 적용하여도 은행(0.05%), 금융투자(0.1%), 상호저축은행(0.15%)의 예금보험료율이 현행 요율보다 낮아짐. 특히, 상호저축은행의 경우에는 예금보험료율이 0.4%에서 0.15%로 크게 감소함.

5) 1997년 11월 이전에는 1인당 2천만원 한도로 예금자를 보호했으나, 같은 해 11월부터는 외환위기로 인한 금융시장의 불안 해소를 위해 원리금 전액을 보호하였음. 이 보호한도는 2000년 12월까지 유지됨.

6) 「법률 제5556호 예금자보호법」(1998.9.16.) 부칙 제3조(보험요율 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관하여 2003년 8월 31일까지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각 부보금융기관이 매년 보험료로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의 예금등의 잔액에 대한 비율의 한도를 다시 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제30조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7) 존속기한 연장 연혁은 [표6] 참고

8)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6조(보험료의 납부시기 등) ①부보금융회사는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별표 1의 산식에 따른 보험료를 공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은행의 경우에는 매 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표1] 예금보험료율의 한도 및 실제 예금보험료율

구 분		은행	금융투자	보험	저축은행	종금	신협*
예보료율 한도 법 §30①	종전('98.4월)	0.05%	0.10%	1.00%	0.15%	0.15%	0.15%
	현행(~'24.8월)	0.50%					
실제 예보료율 시행령 별표1	현행	0.08%	0.15%	0.15%	0.40%	0.15%	
	종전 환원 시	0.05%	0.10%	0.15%	0.15%	0.15%	

* 신협은 2004년 부보금융회사에서 제외

(자료: 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는 예금보험료율 한도가 1998년 수준으로 환원될 경우 2023년 말 기준 연간 예금보험료 수입이 약 7,751억원(32.6%) 감소하고 특히, 상호저축은행의 경우 현행 대비 2,549억원(6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음.

[표2] 존속기한 미연장 시 연간 보험료 수입 감소효과

(단위 : 억원, '23년 수납 예보료 기준)

구 분	현 행 (A)			한도 미연장시 (B)			보험료수입 증감(A-B)		
	고유계정 (55%)	특별계정 (45%)	총보험료 (100%)	고유계정 (55%)	특별계정 (45%)	총보험료 (100%)	고유계정 (55%)	특별계정 (45%)	총보험료 (100%)
은행	7,239	5,941	13,180	4,524	3,713	8,237	△2,715	△2,228	△4,943
금융투자	428	350	778	285	233	518	△143	△117	△259
생명보험	885*	2,583	3,468	885	2,583	3,468	-	-	-
손해보험	1,194	1,039	2,233	1,194	1,039	2,233	-	-	-
종합금융	25	20	45	25	20	45	-	-	-
저축은행	273**	3,805	4,078	273	1,256	1,529	-	△2,549	△2,549
합 계	10,044	13,738	23,782	7,187	8,845	16,032	△2,857	△4,893	△7,7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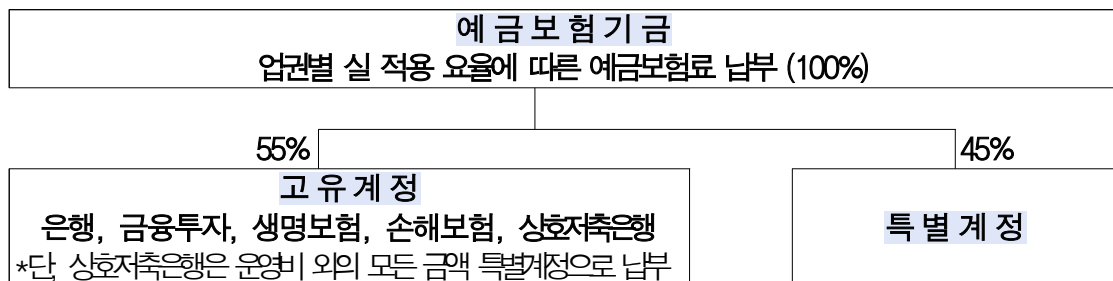
(자료: 금융위원회)

*생명보험: 적립액 목표규모를 달성하여 예금보험료 감면

**상호저축은행: 특별계정의 부채 상환을 위해 고유계정에는 운영경비만 적립

□ 이와 같은 예금보험료 수입의 감소는 예금보험기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예금보험료율 한도의 존속기한 연장 필요성을 확인하기 위해 예금보험기금의 재정 현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예금보험기금은 ① 은행, 금융투자, 손해보험, 생명보험, 종합금융,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보험료를 받아 설치된 각 업권별 고유계정과 ② 상호저축은행계정의 건전화를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⁹⁾(이하 “특별계정”이라 함)으로 구분되며, 각 부보금융회사가 납부하는 예금보험료는 고유계정에 55%, 특별계정에 45% 각각 투입됨.



□ (특별계정) 먼저,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2011년 설치된 특별계정은 31개 부실저축은행에 총 27.2조원을 지원하였는데, 2023년

9) 「예금자보호법」 제24조의4(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의 설치 등) ① 공사는 제24조의3제2항에 따라 예금보험기금에 설치된 상호저축은행계정의 건전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예금보험기금에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이하 “특별계정”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제24조의3제2항에 따른 예금보험기금의 각 계정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② 특별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을 수입으로 한다.

5. 제30조제1항에 따라 각 부보금융회사가 납부하는 연간 보험료 중 100분의 45에 해당하는 보험료. 다만, 상호저축은행의 보험료는 특별계정의 상호저축은행계정에 대한 지원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험료 전액의 범위에서 위원회가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보험료로 할 수 있다.

* 특별계정의 유효기간: 2026년 12월 31일까지(법률 제10476호, 부칙 제2조)

말 기준 순자산은 △5.5조원으로, 특별계정의 유효기간인 2026년 12월 31일까지 부채의 전액 상황이 어려운 상황임.¹⁰⁾

- 이와 같은 상황에서 현행 한도 규정 일몰로 인해 예금보험료율이 하향 조정된다면 특별계정의 잔여 부채 상황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

[표3] 특별계정 현황

(‘23.12월말 기준, 단위: 억원)

자 산				부 채				순자산
구상 채권	미수 보험료	기타 (현금 등)	소계	외부차입 (채권, 정부융자)	계정간 차입	기타 (미지급 이자 등)	소계	
6,427	9,825	738	16,990	50,759	19,280	1,527	71,566	△54,575

(자료: 금융위원회)

- (고유계정) 또한, 예금보험공사는 2009년에 「예금자보호법」 제30조의4¹¹⁾에 따라 예금보험기금 적립액 목표규모(중형사 3~4개사 부실대응 가능수준)를 각 고유계정마다 설정하고¹²⁾, 10년 이내에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예금보험료율을 설정했으나, 고유계정의 기금적립액 현황을 살펴보면, 2023년 말 기준 43.1%의 목표달성도를 나타냄.

10) 매년 약 1.1조원씩(수입: 예금보험료 약 1.3조원, 지출: 이자비용 약 0.2조원) 상환계획이나, 특별계정 운영이 종료되는 2026년 말 기준 순자산을 △1.8조원으로 예상

11) 「예금자보호법」 제30조의4(예금보험기금의 적립액 목표규모의 설정 등) ① 공사는 예금보험기금의 적립액이 적정한 수준을 유지하도록 예금보험기금 적립액 목표규모(이하 이 조에서 “목표규모”라 한다)를 설정하여야 한다.

12) 부보금융회사의 예금액 대비, 은행 1.5%, 금융투자 1.5%, 생명보험 1.2%, 손해보험 1.5%, 저축은행 3%로 목표규모를 설정함.

[표4] 목표규모 하한(금액) 대비 기금적립액 현황

(23.12월말 기준, 단위 : 조원)

구 분	은행	금융투자	생명보험	손해보험	상호저축은행	계
부보예금액	1,883.9	66.9	652.5	238.9	100.3	2,942.6
A. 최초목표(100%) 금액 (부보예금액 대비 비율)	28.3 (1.5%)	1.0 (1.5%)	7.8 (1.2%)	3.6 (1.5%)	3.0 (3.0%)	43.7
B. 현행목표(55%) 금액 (부보예금액 대비 비율)	15.5 (0.825%)	0.6 (0.825%)	4.3 (0.660%)	2.0 (0.825%)	1.7 (1.650%)	24.0
C. 기금적립액	13.0	0.5	5.9	1.3	△1.8	18.8
최초목표 대비(C/A)	45.8%	49.3%	75.4%	37.3%	△61.2%	43.1%
현행목표 대비(C/B)	83.3%	89.6%	137.2%	67.9%	△111.3%	78.5%

(자료: 금융위원회)

- 더욱이 특별계정의 부채 상환을 위해 전 업권 예금보험료의 45%를 특별계정에 납입함에 따라 현행 목표규모를 최초 목표규모 대비 55% 수준(중형사 1~2개사 부실대응 가능수준)으로 하향조정하였으나, 이를 기준으로 한 목표달성도 역시 78.5% 수준임.

- 따라서 예금보험기금의 적립 목표규모를 달성하지 못한 현재 상태에서 예금보험료율 한도가 하향 조정될 경우, 그 목표규모 달성 시기가 지연될 수 있음.

□ 개정안은 과거 구조조정 비용으로 인해 예금보험기금 적립이 충분하지 못한 상황에서 예금보험료 수입이 감소하고, 저축은행 구조조정 비용 부담을 위해 운영 중인 특별계정의 잔여 부채 상환도 곤란해지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현행 예금보험료율 한도규정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으로, 예금보험기금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입법 조치로 보임.

□ 다만, 일몰기한 연장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전체 금융업권에 예금보험료를 한도 0.5%를 계속 적용하는 것에 대하여는 검토가 필요해 보임.

○ 현행법에 따른 금융업권 공통 0.5%의 예금보험료율 한도는 외환위기 대응을 위해 1998년에 마련된 규정으로서, 현재 은행업권 실 적용요율¹³⁾(0.08%)의 6.25배에 달해, 법률상 요율 한도와 실 적용요율 간의 격차가 크게 벌어진 상황임.

[표5] 예금보험료율 한도와 실 적용 요율

구 분	은행	금융투자	보험	상호저축은행	종합금융
예보료율 한도 (법 §30①)	0.50%				
실 적용 예보료율 (시행령 별표1)	0.08%	0.15%	0.15%	0.40%	0.15%

○ 또한, [표4]의 목표규모 대비 기금적립액 현황을 살펴보면, 상호저축은행계정은 기금을 전혀 적립하지 못한 반면, 생명보험계정의 경우 목표규모를 일정 부분 달성하는 등 업권별 기금 적립규모에 차이가 있음에도 예금보험료율 한도를 전체 업권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한 측면이 있음.

13)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실 적용 요율 변천

구분	은행	금융투자	보험	상호저축은행	종합금융회사
'97. 12 이전	0.02%	0.10%	0.10%	0.15%	0.08%
'97. 12 ~ '98. 7	0.03%	0.10%	0.15%	0.15%	0.12%
(금융위기)'98. 8 ~ '00. 7	0.05%	0.10%	0.15%	0.15%	0.15%
(금융위기)'00. 8 ~ '09. 6	0.10%	0.20%	0.30%	0.30%	0.30%
'09. 6 ~ '11. 6	0.08%	0.15%	0.15%	0.35%	0.15%
(저축은행사태)'11. 7 ~ 현재	0.08%	0.15%	0.15%	0.40%	0.15%

○ 존속기한 5차 연장이 이루어진 제21대 국회에서도 기존 요율 한도를 단순히 연장하기보다는 특별계정의 부채 규모, 기금의 목표규모 달성 정도 등을 고려한 적정 요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이를 위해 한도규정의 존속기한을 3년만 연장하고, ‘금융위원회는 적정 예금보험료율에 대한 진행 상황을 6개월마다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다’는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음.¹⁴⁾

○ 따라서, ① 금융위원회의 적정 요율 검토에 필요한 기간을 존속기한으로 설정하되, ② 향후 업권별 적정 예금보험료율 산정을 위한 연구용역 등을 통해 적정 기금목표규모 및 기금적립액을 도출하는 등 사전 준비를 충실히 하여 금융업권별 현실을 반영한 차등화한 예금보험료율 한도를 법률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 금융위원회는 예금보험료율이 종전 한도로 환원될 경우 예금보험료 수입 감소로 인해 예금보험기금의 안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현행 한도(0.5%) 규정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 또한, 2027년 12월까지의 금융회사의 부담¹⁵⁾ 여력이 제한적이므로 현행 한도로 존속기한을 연장하되, 2026년 이후 적정 예금보험료율을 종합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14) 제389호국회 정무위원회회의록(법안심사제1소위원회), 2021.7.20.

15) 부보금융회사는 예금보험기금에 내는 예금보험료 외에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을 위해 2027년 12월 31일까지 매년 예금등의 잔액의 0.1%를 특별기여금으로 예금보험공사에 내야 함.

□ 참고로, 과거 5차례의 존속기한 연장 연혁은 다음 표와 같음.

[표 6] 한도규정의 존속기한 연장 연혁

구 분		공포	존속기한	비 고					
설정		1998.09.16.	5년 (~2003.08.31.)	- 종전의 업권별 예금보험료율 한도를 외환위기 대응을 위한 기금 확충 필요성에 따라 전 업권 공통 0.5%로 인상하되, 존속기한 설정 - 존속기한 내에 예금보험료율 한도를 다시 설정하지 않을 경우, 1998년 9월 이전 법률의 한도 적용 *1998년 9월 이전 법률의 예금보험료율 한도					
				은행	금투	보험	저축은행	종금	신협
				0.05%	0.10%	1.00%	0.15%	0.15%	0.15%
연장	1차	2002.12.26.	5년 (~2008.08.31.)	- 공적자금 상환을 위해 2002년 이전 예금보험기금의 자산 및 부채를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에 포괄 이전 - 예금보험기금은 클린화된 상태에서 2003년 재출범 - 클린화된 예금보험기금 적립을 위해 당분간 현행 예금 보험료율을 유지하기로 합의					
	2차	2008.09.26.	3년 (~2011.08.31.)	- 존속기한 경과 후 재연장(법률 제9134호 부칙 제2항) - 정무위는 존속기한 5년 연장 안을 의결했으나 - 금융시장 안정 등 시장 환경변화로 예금보험료율을 낮추어 갈 수 있는 상황이므로, 존속기한을 3년만 연장 하고 3년 뒤 금융시장 환경에 맞춰 관련 문제를 다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본회의 수정안에 따라 최종 3년 연장 의결					
	3차	2011.05.19.	5년 (~2016.08.31.)	- 상호저축은행 특별계정의 자금조달을 고려하여 일몰조항을 삭제하는 안이 발의되었으나, - 기업 부담을 고려해 주기적 심사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일몰기한 삭제보다는 재연장하는 안으로 합의					
	4차	2016.03.29.	5년 (~2021.08.31.)	- 상호저축은행 특별계정의 재원 조달 차질을 우려해 존속기한 재연장					
	5차	2021.8.17.	3년 (~2024.08.31.)	- 5년 연장 안이 제안되었으나, 존속기한을 단순히 연장 하기보다는 적정 효율에 대한 검토 필요성 제기 - 존속기한을 3년 연장하고 이 기간에 금융위가 적정 효율에 대해 검토하도록 합의 - 금융위가 적정 예금보험료율 검토 진행상황을 6개월 마다 상임위에 보고하는 부대의견 채택					

(자료: 금융위원회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성)

2. 부칙

□ 개정안 부칙은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개정규정의 효력 발생일과 그 적용 시점을 규정하려는 것임.

- 김용만의원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였고, 강민국의원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법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 연도 또는 분기부터 개정된 요율 한도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였음.

강민국의원안	김용만의원안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험료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9134호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다만, 은행의 경우에는 시행일이 속하는 분기를 말한다)에 대한 보험료분부터 적용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가. 보험료율 한도에 관한 적용례

□ 「법률 제9134호 예금자보호법」 부칙 제2항¹⁶⁾은 2024년 8월 31일까지 예금보험료율 한도를 다시 정하지 않는 경우 1998년 「법률 제5492호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요율 한도(업권별 0.05~1%)로 환원되도록 규정하고 있고, 현재 그 시한이 임박하였으므로, 현행 한도규정 일몰 후 다시 현행 규정과 같이 설정하는 경우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16) 「법률 제9134호 예금자보호법」 부칙 제2항(보험료율 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관하여 2024년 8월 31일까지 각 부보금융기관이 매년 보험료로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의 예금등의 잔액에 대한 비율의 한도를 다시 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률 제5492호 예금자보호법중개정법률 제30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 「예금자보호법」 제30조는 매년 부보금융회사가 예금등의 잔액에
예금보험료를 곱한 금액을 연간 보험료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¹⁷⁾,
구체적인 산정 방법 등은 시행령으로 위임하였는데, ① 은행업권은
예금등의 분기별 평균잔액에 요율을 곱한 금액을 매 분기 종료 후 1개
월 이내에 납부하고, ② 그 밖의 업권은 예금등의 연평균잔액에 요율
을 곱한 금액을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¹⁸⁾ 즉, 예금보험료는 은행업권의 경우 분기단위로, 그 밖의 업권
의 경우 사업연도 단위로, 해당 부보금융회사 예금등의 평균잔액에 요
율을 곱하여 산정됨.

□ 따라서 현행 규정 일몰 후 현행 요율 한도의 존속기한을 다시 설정하
는 경우, 개정 법률 시행 시점을 기준으로 예금보험료 산정 시에 1998
년도 요율 한도(업권별 0.05~1%)와 재설정된 현행 요율 한도(업권 공

17) 「예금자보호법」 제30조(보험료의 납부 등) ① 각 부보금융회사는 매년 예금등의 잔액(보험회사의 경우
에는 「보험업법」 제120조에 따른 책임준비금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1천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그 금액이 1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
는 10만원)을 연간 보험료로 공사에 내야 한다.

18)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6조(보험료의 납부시기 등) ① 부보금융회사는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매 사
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별표 1의 산식에 따른 보험료를 공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은행의 경
우에는 매 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별표 1】

부보금융회사		산 식
1. 은 행		분기별 보험료=예금등의 분기별 평균잔액× $\frac{8}{1만} \times \frac{1}{4}$
2.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연간보험료=예금등의 연평균잔액× $\frac{15}{1만}$
3. 보 험 회 사	생명보험회사	연간보험료=제 16조제 3항에 따른 금액× $\frac{15}{1만}$
	손해보험회사	연간보험료=제 16조제 3항에 따른 금액× $\frac{15}{1만}$
4. 종 합 금 용 회 사		연간보험료=예금등의 연평균잔액× $\frac{15}{1만}$
5. 상 호 저 축 은 행		연간보험료=예금등의 연평균잔액× $\frac{40}{1만}$

[표 7] 일몰 후 재시행 시 요율 적용방식(은행외 금융기관) 예시

< 사업연도 단위 적용: 강민국의원안 >

☐ 강민국의원안은 사업 연도 또는 분기 단위의 예금보험료 산정 상황을 감안하여 법률 적용 시점을 명확히 하는 한편, 예금보험료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개정 규정의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 연도 또는 분기에 대하여는 재설정된 현행 요율(업권 공통 0.5%)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였음.

- 17 -

[표 8] 강민국의원안에 따른 시행 시점 기준 요율 적용 변화

법률 시행 시점	은행 (분기 단위 산정)	그 밖의 부보금융기관 (사업연도 단위 산정)
2024.9.1. ~ 9.30.	· 현행 요율 적용	· 현행 요율 적용
2024.10.1. ~ 12.31.	· 2024.9.1 ~ 9.30: 1998년 요율 적용 · 2024.10.1 ~ : 현행 요율 적용	· 현행 요율 적용

□ 이와 관련하여, 헌법 제13조제2항¹⁹⁾에 따른 소급입법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²⁰⁾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 그러나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르면, 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반면, 과거에 시작되어 완성되지 아니한 사실관계를 규율하는 ‘부진정소급입법’²¹⁾의 경우 소급입법이 실현하려는 공익보다 제한되는 신뢰보호의 가치가 더 큰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인정됨.²²⁾
- 참고로, 만약 보험료 부과대상기간(사업연도 또는 분기) 종료 후 개정이 시행되었음에도 개정된 요율 한도를 종료된 부과대상기간에 소급적용한다면, 헌법 제13조제2항이 금지하는 이미 완성된 사실·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한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므로, 소급 적용은 어려울 것으로 보임.

19) 「대한민국헌법」 제13조 ②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20) 소급입법은 진정소급입법과 부진정소급입법으로 구분되며, 진정소급입법이란 과거에 이미 완성된 사실관계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입법형식을, 부진정소급입법이란 과거에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아니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입법형식을 의미함.

21) 헌법재판소는 과세단위가 시간적으로 정해지는 조세에 있어 과세표준기간인 과세기간 진행 중에 납세의무를 가중하는 것은 이미 충족되지 아니한 과세요건을 대상으로 하는 부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한다고 결정함(헌법재판소 1998. 11. 26. 선고 97헌바58).

22) 헌법재판소 2001.2.22. 선고 98헌바19 결정 등

나. 체계자구의 정리

□ 개정 법률이 현행 한도규정의 존속기한인 2024년 8월 31일 이내에 시행될 가능성은 크지 아니하므로, 현행 규정의 일몰 후 다시 종전 규정을 그대로 법률에 반영할 수 있도록 체계자구의 정리가 필요함.

□ 존속기한 경과로 개별 조항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 ① 종전과 동일한 내용으로 해당 조항을 전부 개정하는 방식과 ② 존속기한이 경과된 종전 조항을 삭제하고 가지번호를 활용해 동일한 내용을 신설하는 방식을 사용하는데, 최근에는 법률 개정 연혁을 명확히 나타내기 위해 가지번호를 활용한 신설 방식이 주로 활용됨.

- 그러나, 현행법 제30조제1항을 삭제하고 가지조문을 내어 동일한 내용을 신설하는 방식을 적용한다면,²³⁾ 삭제되는 제30조제1항을 인용해 실 적용 보험료를 산출하도록 한 시행령 제16조제1항²⁴⁾ 등의 개정(삭제된 제30조제1항→신설된 가지조문)까지 마쳐야 정상적으로 해당 사업 연도 또는 분기분의 예금보험료를 수납할 수 있어, 개정 법률 시행에

23) < 가지번호를 활용한 신설방식 적용 경우 >

제29조의2(보험료의 납부 등) 각 부보금융기관은 매년 예금등의 잔액(보험회사의 경우에는 「보험업법」 제120조에 따른 책임준비금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1천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해당 금액이 1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10만원)을 연간 보험료로 공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 신 설 >
제30조(보험료의 납부 등) ① < 삭 제 >

24)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6조(보험료의 납부시기 등) ①부보금융회사는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별표 1의 산식에 따른 보험료를 공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은행의 경우에는 매 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도 불구하고 예금보험료 수납이 지연될 수 있음.

□ 따라서, ① 존속기한이 경과된 현행법 제30조제1항을 동일한 내용으로 전부 개정하여 해당 조문번호의 변경이 없도록 하고²⁵⁾, ② 존속기한이 만료된 조문의 종전 부칙을 개정 조문의 부칙으로 오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종전 부칙을 삭제한 후 ③ 개정 법률의 부칙에 전부개정된 제30조제1항의 존속기한을 규정하는 것이 입법기술적으로 타당해 보임.

[표 9] 개정안 체계자구 수정의견

현행	강민국·김용만의원안	체계자구 수정의견
제30조(보험료의 납부 등) ① 각 부보금융회사는 매년 예금등의 잔액(보험회사의 경우에는 「보 험업법」 제120조에 따른 책임 준비금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금액)에 1천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 한 금액(해당 금액이 10만원보 다 적은 경우에는 10만원)을 연간 보험료로 공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후단 생략) ② ~ ⑦ (생략)		제30조(보험료의 납부 등) ① 각 부보금융회사는 매년 예금등의 잔액(보험회사의 경우에는 「보 험업법」 제120조에 따른 책임준 비금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1천분의 5를 초 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해당 금액이 10만원보다 적 은 경우에는 10만원)을 연간 보 험료로 공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후단 생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부칙 <법률 제9134호> ②(보험료를 한도에 관한 적용 례) 제30조제1항의 개정규 정에 관하여 2024년 8월 31일 까지 각 부보금융기관이 매년 보험료로 납부하여야 하는 금 액의 예금등의 잔액에 대한	부칙 <법률 제9134호> ②(보험료를 한도에 관한 적용 례) 제3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관하여 2027년 12월 31일(김용만 의원안은 2027년 8월 31일)까지 각 부보금융기관이 매년 보험 료로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의	부칙 <법률 제9134호> ② <삭 제>

25) 존속기한 경과 후 요율 한도규정을 연장한 「법률 제9134호 예금자보호법」(2008.9.26., 2차연장) 개정 시
에도 전부 개정 방식을 활용함.

현행	강민국·김용만의원안	체제자구 수정의견
비율의 한도를 다시 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률 제5492호 예금자보호법중개정법률 제30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예금등의 잔액에 대한 비율의 한도를 다시 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률 제5492호 예금자보호법중개정법률 제30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u><신 설></u> <u>제2조(보험료에 관한 적용례)</u> 법률 제9134호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다만, 은행의 경우에는 시행일이 속하는 분기를 말한다)에 대한 보험료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u>제2조(보험료를 한도에 관한 적용례)</u> 제3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관하여 2020년 0월 0일까지 각 부보금융회사가 매년 보험료로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의 예금등의 잔액에 대한 비율의 한도를 다시 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률 제5492호 예금자보호법중개정법률 제30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u>제3조(보험료에 관한 적용례)</u> 제3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다만, 은행의 경우에는 시행일이 속하는 분기를 말한다)에 대한 보험료분부터 적용한다.

문 의 처

02)6788-5113